

EU Brief

| EU 동향 |

- 장 모네와 유럽통합의 교훈
A Lesson from Jean Monnet and European Integration
- 유럽 채권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 배경과 시사점
Background and Implication of Negative Yields on European Bonds
- EU의 탈(脫)러시아 가스 정책에 대한 현황과 전망
EU's Gas Policy to Reduce Dependence on Russia
- 구글의 유럽 내 이미지 회복 노력
Google's Image Restoration Strategies in Europe
- 2019년 목표로 자본시장동맹 추진
Carrying Out Capital Markets Union by 2019



YONSE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s Regul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not limited to Korea. In fact, the discuss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currently centred on the EU. The EU focuses on enhanc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to which personal information belongs and strengthening the related regulations. Korea tends to show interest in and imitate the regulatory trends of the EU rather than those of the USA, and this could be of significance in that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direction of Korea's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어느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은 사건에 참여한 전·현직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소비자단체는 대형 유통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위반행위를 해왔다면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인데, 바야흐로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존망이 좌우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은 EU다. EU는 주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증대 및 이를 위한 규제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국은 정서적인 친밀감 때문인지 미국보다는 EU의 규제동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방향성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발의 및 논의 경과

2012년 1월 25일, EU집행위는 1995년에 마련된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개정안¹」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1995년에 마련한 「정보보호지침」의 원칙을 19년 만에 디지털 환경에 맞게 새롭게 수정한 것으로, 개인의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와

글로벌화·디지털화되어가는 EU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EU의 2012년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개정안 발의 이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와 영국 및 미국 기업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를 표명함에 따라 EU 회원국들도 개정안 처리에 유보적인 반응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2013년 3월 19일 유럽의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 관련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시민 자유·정의·가족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EU는 2013년 10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의제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상정해 논의하였다. EU는 당초 회원국 간에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35개국 외국 지도자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대규모 감시 사건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냉각되었고, 그 결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으며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담보 상태에 있던 EU의

¹ European Commission (2012). Commission proposes a comprehensive reform of data protection rules to increase users' control of their data and to cut costs for businesses.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동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모든 회원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해법을 마련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자본시장 통합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동맹은 과거 여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추진동력을 잃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런던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TheCityUK의 CEO 크리스 커밍스는 'EU가 2019년까지 자본시장동맹의 기본 골격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같이 세련된 자본시장을 운영하기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란은행(BoE)은 EU의 자본시장동맹 구축 작업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게임'에 비유하고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조성될 것이다. 또한 역내 국경 간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이 제거되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잘 작동될 경우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인 중장기 유럽 투자전략(Investment Plan for Europe)에 민간자본의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다.

자본시장동맹의 장애 요인

그동안 EU는 자본시장 통합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자본시장 통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계, 싱크탱크, 언론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차원에서 제기된 논의나 정책 제안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시장동맹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자본시장동맹을 실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다른 유로존 각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가장 우려스럽다. 유럽 차원에서 자본시장 통합을 추진하려던 시도는 회원국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다.¹⁰ 28개 회원국들의 세법과 회계기준은 물론 증권거래법, 기업도산법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럽 국가 중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영국이 EU에 감독권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어 EU 차원의 자본시장 통합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런던의 금융거래 기득권을 지키려는 영국은 자본시장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0개국은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 또한 자본시장동맹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도입 필요성과 EU집행위의

¹⁰ 유럽 자본시장 통합의 첫 번째 논의는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두 번째 논의는 1992년 단일시장 통합프로그램 추진을 계기로 1990년대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계기로 세 번째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음.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반대로 미국의 IT 기업들은 강화된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인해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² 그러던 중 EU 의회는 2014년 3월 12일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EU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앞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³

2014년 개인정보보호 법안 통과

이번에 EU 의회가 통과시킨 개인정보보호 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기존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법 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법(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⁴ ②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③ 미국의 대규모 감시사건으로 인해 비EU 회원국으로의 정보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⁵ ④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는 규정(최고 1억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5% 벌금⁶)이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EU는 유럽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일 법체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이행되므로 회원국마다 지침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Regulation)은 유럽의회를 통과하여 유럽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는 순간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각국 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EU는 하나의 범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을 수립함으로써 유럽 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법체제를 통일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U 회원국의 개별법이 아닌 이 단일법만 준수하면 되는 데, EU는 이로 인해 매년 약 23억 유로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⁷ 한편, 기업들은 EU 회원국 각각의 감독기구가 아닌 EU 차원의 단일 감독기구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one-stop-shop’ 방식으로 인해 더 쉽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⁸

둘째, 이번 법안은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권 보장, 명백한 동의 확보, 개인정보 수집제한, 개인정보삭제권 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는 개인정보삭제권, 즉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관리자에게 ①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배포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관리자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나 복사 또는 복제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⁹

셋째, 2013년 발생한 미국의 대규모 감시사건 이후, EU는 EU 시민의 보호를 위해 어떤 기업이라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 공개하기 전에 EU 정보보호당국(DPA: 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즉, 제3국이 특정 기업(가령, 구글과 같은 검색회사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회사)에 EU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EU 정보보호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한 해 5천명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핵심 업무가 민감한 정보의 처리 또는 개인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은 정보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을 지정해야 한다. 다른 EU 회원국의 관리회사(가령, 외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개인은 관리회사가 존재하는 국가의 정보보호당국뿐만 아니라 당해 개인이 사는 국가의 정보보호당국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EU의 강화된 개인정보 규제 동향

개인정보보호 법안 통과와 더불어 EU에서는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U의 「데이터 보유 지침(Data Retention Directive)」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최장 2년까지 보관해야 하고 EU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06년 런던 등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이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인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개인정보보호 법안 통과 후 얼마 되지 않은 2014년 4월 8일 이 지침이 EU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지침이 해당자의 사생활에 관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주무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매우 심각하게 사생활과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보유가 심각한 범죄와의 싸움 등 공공이익(즉, 공공의 안전)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사생활과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 따른 데이터의 보유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침해가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국한되도록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보았다. 결국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지침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스노든 사태 등으로 민감해진 유럽의 프라이버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데이터 관련 법안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¹¹

한편,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과 같은 미국 IT 기업에 대한 EU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EU는 이들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있다고 보았다. EU의 정보보호당국(DPA)은 페이스북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2015년 2월경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EU 가입국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이 위법성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EU 정보보호당국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눌렀거나 로그인했을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문제다. EU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페이스북 소유 기업(와츠앱, 인스타그램, 오컬러스, 아틀라스 등)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¹² EU 의회는 2014년 말 구글이 유럽 내에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자사 서비스와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 우선 반영하고 있다며 검색과 광고서비스를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정보보호당국은 구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벌금 1,500만 유로(183억 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³ EU는 나아가

2 “미-EU 관계 급랭, 개인정보보호법 급물살.” (2013. 10. 25). 『연합뉴스』.

3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안은 일반 법(regulation)과 수사당국에 의해 취합되는 정보에 관한 지침(directive)로 구성되어 있음.

4 함인선 (2012. 2).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저스티스』, 133호.

5 김진익 (2014. 3. 24). “EU 의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안 승인”(Kiri Weekly). 보협연구원.

6 2012년 개정안에서는 위반 기업에 최고 100만 유로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EU 의회는 규제를 강화하여 한도를 최고 1억 유로와 5%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음.

7 한은영 (2014).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정보통신방송정책』, 26(7).

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er Jourova’s statement at justice and home affairs council (2015). Press conference, March 13.

9 그러나 이 권리는 ① 역사적·통계적·연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공공의 건강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계약 충속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될 때에는 제한될 수 있음.

10 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7).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12 “구글·페북에 칼 겨는 EU... 美 부글.” (2015. 3. 6). 『국민일보』.

13 “EU,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지적.” (2015. 2. 24). 『조선일보』.

인내심을 잃어가는 유럽의 무슬림 포용정책

Europe's Muslim Embracing Policies Reach the Limits of Patience

Every country or region may have issues that seem never to be solved. The issue of history awareness and dispute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one example. For Europe,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with Islamic culture is the most challenging. The conflict with Islam came to its climax over Eastern Europe early in the 1990s. The discord with Muslims was one of the greatest concerns also in Western Europe, which has promoted multiculturalism in the spirit of tolerance and harmony. The issue of Muslims started to be taken seriously from the 1990s. For more than 20 years, relations with Muslims have deteriorate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nstitution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유럽의 반(反)이슬람주의 확대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간의 역사 인식과 영유권 분쟁이 그렇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슬람 문화와의 교감 내지 공존 문제가 난제 중의 난제다. 이슬람과의 충돌은 1990년대 초 동유럽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유고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보스니아 독립에 반대한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한 내전을 일으켰다. 당시 무슬림¹ 인구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인구의 5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보스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등에는 종교적 갈등의 폭발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무슬림과의 갈등은 관용(tolerance)과 조화 속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강조해온 서유럽 지역에서도 크나 큰 근심거리다. 무슬림 문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심각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무슬림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이단아' 취급을 받던 반이슬람주의자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이 2017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극우 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을 이끄는 르 펜은 무슬림들이 자신들만의 복장, 음식, 기도실 등을 요구하며 프랑스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러한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² 무슬림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관용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이슬람주의의 확산은 비단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0년 10월 기민당(CDU)의 한 집회 연설에서 그동안 독일이 취해온 다문화주의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인했다.³ 왜냐하면 무슬림과 독일인이 서로 섞이지 않고 반목과 질시만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치 샐러드 접시 위의 야채와 과일이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섞이지 않은 채 함께 놓여 있는 '샐러드 볼(salad bowl)' 현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무슬림이 그 사회에 잘 융화되도록 하는 해법을 찾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무슬림만의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⁴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가 이들의 동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성 등 상호간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최근에는 IS(Islamic State)에 가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잠입하는 유럽계 아랍인들이 늘어나면서 무슬림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국적의 IS 가입 전사들은 이미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² Q&A: Marine Le Pen on France and Islam. (2015. 1. 13). *Al Jazeera*.
³ Merkel says German multiculturalism has failed. (2010. 10. 17). *Reuters*.
⁴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2010). Muslim Networks and Movements in Western Europe. p. 8.

¹ 이슬람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함.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벌금 수준 등과 관련하여 조만간 한국 내에서도 EU와 비슷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백대용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미국 IT 기업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U 당국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U 당국은 애플과 구글 등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어 미국 정보기관이 손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¹⁴

또한, EU 의회는 미국과의 은행계좌 정보공유를 중단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 정보당국이 국가 간 은행계좌 거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을 감시해온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EU집행위는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과의 은행계좌 정보 공유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중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U는 미국이 EU의 사생활 보호법규를 존중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거래와 항공승객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국제은행 간 통신망 시스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미국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실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도청사실이 알려진 후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위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마틴 슈츠 유럽의회 의장도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 추락 등을 감안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뢰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사점

미국 IT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EU가 EU 역내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EU 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금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한편 EU의

¹⁴ "스노든 사태와 정보 주권." (2013. 8. 11). 「디지털타임스」.